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85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전진숙 · 이수진 · 이주희
김남희 · 이개호 · 손 솔
정준호 · 양부남 · 김정호
이인영 · 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사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제관계, 사실혼, 동거관계, 과거 친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는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성과 통제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관계 종료 이후 오히려 살인·중상해·보복 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 속에서 관계 유지와 회복을 전제로 한 보호처분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반복적·지속적 폭

력이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보복·위협·경제적 파탄·돌봄 공백·심리적 외상 등 실질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함.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어, 가족은 형사절차와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됨.

이에 법률의 적용 대상을 혼인·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에서 벗어나, 정서적·생활적·경제적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을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위험 인자로서 강압적 통제와 관계단절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정당방위의 특례조항의 고려요소로 구성하여 해당 요소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형법」보다 완화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아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의 배제, 관계 회복·중재 강요 금지, 정당방위 판단의 특례 등 피해자 중심의 형사절차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명시적인 보호·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및 적용 대상 전환

가정폭력 중심의 기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법의 제명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혼인 여부와 무관한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함.

나. 친밀관계 및 폭력 개념의 명확화

정서적·신체적·경제적·생활상의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관계를 ‘친밀관계’로 정의하고,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의 개념을 정의함.

다. 강압적 통제 및 관계 단절기 위험성 반영

반복적·지속적인 지배와 통제 행위를 강압적 통제로 정의하고, 이별·분리·접근금지 이후의 관계 단절기를 고위험 시기로 고려하여 양자를 정당방위 특례 규정의 구성 요소 및 고려 요소로 구성함.

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 중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복·협박·추적·재산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초기 대응 및 임시조치 강화

신고 시 즉각 출동과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행위자 식별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통신·정보 접근 차단,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도입함.

바. 피해자 중심 형사절차 확립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고, 반복적·지속적 폭력의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 판단 특례와 전문성 보장 규정을 마련함.

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폭력관계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거주 안전과 심리·생계·돌봄 지원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이후에도 국가 책임이 지속되도록 함.

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책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사법 절차와 보호·지원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절차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자. 관계 회복·중재 강요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관계 회복이나 중재를 금지하고, 수사·재판·보도·지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규정함.

차. 국가의 예방 책임 및 실태조사

보복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실패 사례 분석 시 피해자 가족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친밀한 관계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설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및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및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밀관계”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서적·신체적·경제적·생활상의 유대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관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

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친밀관계폭력”이란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친밀관계폭력범죄”란 친밀관계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의 죄

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가족등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5.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친족

6. “강압적 통제”란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행동, 의사결정,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이동, 정보 접근 등을 제한·감시·지배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관계 단절기”란 친밀한 관계의 종료, 이별 통보, 동거·혼인 관계의 해소 또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의 기

간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9. “피해자가족등”이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생계·돌봄·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11. “2차 피해”란 친밀관계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등이 보복, 위협, 경제적 손실, 사회적 낙인, 심리적 외상 등 직접적 피해에서 파생된 새로운 종류의 피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모든 대응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친밀관계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

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친밀관계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형사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정책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③ 이 법은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 체계를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신고 및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제6조(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진행 중인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친밀관계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3. 피해자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6.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

시조치를 위반하여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13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

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자 식별)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상호 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식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식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목, 작성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당사자 간에 과거 친밀관계폭력 신고 및 현장출동기록,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2. 당사자 간에 과거 폭언이나 위협,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3. 각 당사자의 본인 또는 제3자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4. 각 당사자의 신체 크기,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심각도가 대등한 지 여부
5. 목격자의 증언
6. 기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를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제12조(위험성 평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의 증거 확보 및 임시조치 등 처분의 판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조사서의 항목, 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제13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경고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8.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는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와 병과하여야만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친밀관계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8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6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⑨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친밀관계폭력행위자,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

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⑬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2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판사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임시조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항고) ① 친밀관계폭력행위자,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6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

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8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 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장 형사절차의 특례

제21조(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친밀관계폭력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의 죄
2.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22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3조(정당방위 판단의 특례) 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있어 과거의 지속적·반복적 폭력행위 또는 강압적 통제행위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기초하여 부당한 법익침해의 발생에 직면하였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狀)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가 관계단절기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판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에게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피해자보호명령

제2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전자장치의 부착
 5. 친권자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6.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7.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8. 피해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민등록열람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제6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26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1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합산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29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

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친밀관계폭력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27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28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친밀관계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피해자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및 폭력관계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33조(주거 안전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주거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긴급주거지원, 주거 연계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 긴급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피해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돌봄·육아·교육 공백 및 생계 위기에 대하여 사회보장·보육·고용 보호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심리·법률등에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피해자가족등의 권리 및 국가의 책무) ① 피해자가족등은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족등에 대하여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인하여 피해

자가족등에게 발생한 심리적 외상, 돌봄 공백, 생계 위기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을 연계·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피해자 보호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제3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장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2.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3.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6.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7.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37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른 기존 보호·지원 체계를 기초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수사·사법 절차와 보호·지원 서비스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체계에 가족 지원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수사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관계 회복·중재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제39조(관계 회복·중재 금지) 법원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관계 회복이나 중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재판·보도·지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예방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

제41조(국가의 예방 책임) 국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국가 책무의 이행으로서, 반복 신고 또는 고위험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예방 실패 점검 및 개선) ① 국가는 예방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② 예방 실패 분석에는 피해자가족등에게 발생한 사망, 상해, 자살, 경제적 파탄, 장기적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및 공표) 국가는 주기적으로 친밀관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상습적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28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3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상습적인 강압적 통제행위) 상습적인 강압적 통제행위에 바탕하여 이 법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친밀관계폭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

한 특례법」 제2호제10호”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의5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제5조”를 “제22조”로,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를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로 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8호”로, “제2조제4호에”를 “제2조제10호에”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